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안 제6조의2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며(안 제6조의4 신설),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추징함(안 제51조제4항 신설).
-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안 제6조의2제2항), 입장권 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의 접수·처리를 위한 신고기관을 지정하며, 관련 자료제출과 수사기관에 자료 제공 등을 위한 근거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함(안 제6조의3 및 제45조의2제1항 신설).

II. 검토의견

1. 안 제4조의4에 따른 과징금

안 제4조의4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행정기본법」¹⁾은 행정청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

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1981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최초로 경제적 이익 환수 성격의 과징금이 도입된 이후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중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유형의 과징금 및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과징금이 등장하였으며, 이 중 경제적 이익 환수 성격의 과징금에 있어 현행 입법례는 ①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경우(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②불법행위 기간의 매출액 등 일정기준액의 일부를 환수하는 경우(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분의 ○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③징벌적 차원에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 등이 있음²⁾.

개정안에 따른 과징금은 이 중 징벌적 차원에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의 과징금으로, 이러한 과징금에 대한 타 입법례들이 일반적으로 5배 이하 범위의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일반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음.

1) 「행정기본법」 제28조(과징금의 기준)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사유
3. 상한액
4.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5.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

2)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440·441

< 관련 입법례 >

법률명	관련 조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을 위반한 횟수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횟수는 합산한다.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① 공단은 제43조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진료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진료제한 조치가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진료제한 조치를 갈음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게 한 보험급여의 금액 또는 거짓이나 부정·부당하게 지급받은 진료비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과징금)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과징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압표 행위의 높은 수익성과 재발 우려를 고려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철도사업법」에서는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공직선거법에서는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관련 입법례 >

법률명	관련 조문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안 제49조의3에 따른 형벌 감면

안 제49조의3³⁾은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신고기관⁴⁾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특별검사 관련 법률은 수사·재판절차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진술, 증언, 자료제출행위 또는 제보를 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⁵⁾ 일부 법률에서

3) 안 제49조의3(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중에서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자진신고한 자,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제6조의3에 따른 신고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안 제6조의3(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의2(형벌 등의 감면) ①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서 협조가 이루어진 때에 형의 감면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법률에서의 형의 감면은 자본시장 정보이용 범죄 및 특별검사 수사대상 범죄 등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특수한 사정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개정안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에 대해서 협조에 따른 형의 감면을 인정할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개정안은 형의 감면을 수사기관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신고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로 하였는데, 형사사법기관이 아닌 기관에 협조한 사실이 형벌 감면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수사기관의 밀실에서 범죄인의 협조가 이루어져 수사와 재판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은 원칙적으로 유죄 협상(Plea Bargaining)⁶⁾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이 현행 형사사법 법체계에 부합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6) **유죄 협상(Plea Bargaining)**이란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에게 형량을 감경 또는 감면해주는 제도로,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참고로, 법무부는 안 제49조의3에 따른 형벌 감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이른바 김건희특검법 등 보호법익이 매우 중한 소수의 법률에서만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증거제공 등의 방법”과 “적극 협조”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감면 대상이 되는 범죄를 특정하지 않고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형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여 협조내용과 무관한 별개의 부정구매·부정판매범죄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3.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안 제6조의2제1항제1호7) 부정구매죄의 구성요건인 “보안 조치”나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이라는 표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보완 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49조의3의 “자진신고”는 그 의미가 「형법」상 자수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의견을 밝힘.

(전문위원 이 은 정)

7) 안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구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